

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)

2021. 11. 01.



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(11.1.)

- (배경)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 단계 변경으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하기 위함
- (주요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향)

구분	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단계 명칭	·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	· 대규모 행사 허용 · 실내취식	· 사적모임 제한 해제
전환 기준	① 예방접종 완료율(1차 개편 70%, 2차 개편 80%) ② 중환자실 및 입원병상 여력(> 40%) ③ 주간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, 재생산지수 등 ※ 세부지표는 일상회복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		

※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통합 추진

자세한 사항은 대한산업보건협회 홈페이지 > 공지사항에 있습니다.

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
〈공통사항〉

- 모든 사업장(1인 이상)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(방역관리자)를 지정
- 밀집도, 환기상태,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, 전체 노동자*에게 매뉴얼 안내·교육 등을 통해 전파
 - 안내 및 교육된 지침은 게시하여 근로자가 상시 볼 수 있도록 조치
- * 협력업체 노동자, 파견·용역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 근로자 포함
-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, 보건소·의료기관(선별진료소, 이송병원 등)과 비상연락체계 구축

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
〈공통사항〉

-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
- 휴가제도(연차휴가, 병가, 가족돌봄휴가 등)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
-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

〈조치사항〉

* 특히, 임신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, 휴가 등 적극 활용

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· 300인 이상 사업장 (제조업 제외) · 시차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10% (권고)	· 추후 제도 개편에 따라 결정 예정	

- ※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- ※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·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

-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*은 방역수칙** 준수

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 **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

3 회의·교육 및 모임·회식, 출장 등
〈공통사항〉

-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
- 예방접종 완료자*는 집합·모임·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
- 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소식 보기

: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)

〈회의 및 워크숍, 교육 연수 등〉

-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*으로 실시하되,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방역수칙**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

* 회의시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

** 발열(37.5°C이상) 확인, 마스크 착용,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간 충분한 거리 유지, 유증상자는 참석금

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소규모(100인 미만) 행사 및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모임 가능· 대규모(100~499미만) 행사 및 집회는 접종완료자*로만 가능· 500명 이상은 원칙적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가능 (장소별, 목적별 행사 수칙 통합)· 접종완료자만 취식금지 해제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행사기준 제한인원 기준 해제 또는 단계적으로 인원을 상향하며 해제 검토
※ 좌석 띄우기,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		

* 예외사항: ❶ PCR 음성 확인자, ❷ 18세 이하, ❸ 불가피한 미접종 등

- **접종 완료자** 등으로만 구성된 행사*는 좌석 띄우기,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는 해제하고,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

* 접종 완료자 여부 확인 주체는 집회 주최자(집회 신고자) 또는 관리·운영자임

– 다만,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소규모 모임*, 사내 동아리 활동, 취미모임, 회식(중식 포함) 등은 자제하고,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

*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각종 기념회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 등

– 2차 개편시 “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원 관련 행사*”도 **접종 완료자**로 구성시 **인원제한 없음**

*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 및 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의원회, 방송제작 및 송출 등

- **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(안전보건교육)**을 대면(집체 또는 현장교육)으로 실시하는 경우 **제한인원 기준***을 준수하여 실시

* ▲ 100인 미만: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실시 가능, ▲ 100인~499인: 접종자로만 구성 하여 실시, ▲ 500인 이상: 원칙적 금지

– 다만, 안전보건교육은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4m²당 1명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

〈사적 모임〉

- 수도권 10명,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*

– 직장동료,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

* 3차 개편시 인원 제한 해제 예정

**4 의심증상
모니터링 및
유증상자
발생 시 조치
〈공통사항〉**

〈출장〉

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· 수도권 10명, 비수도권 12명 (접종자, 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) · 식당 및 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		· 인원 및 모임제한 해제

* 예외사항: ① 동거가족, 돌봄(아동, 노인, 장애인 등), ② 임종 등

• 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로 진행하되,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

–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

*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,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(휴가, 재택근무, 휴업 등 활용)

〈조치사항〉

• 동일 부서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,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

• 근무 중 증상,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

• 외부 방문자는 출입 명부 작성 및 유지(QR코드, 안심콜 등)

•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(37.5°C이상)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(기침 등) 여부 확인

※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,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*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



소식 보기

: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)

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· 휴게실 관리 (공통사항)

<조치사항>

6 소독 및 위생 · 청결 등 (공통사항)

<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>

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· 1일 2회	· 추후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예정	
	※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 조정 검토	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, 병가·연차휴가·휴업 등을 활용*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

* 회사 단체협약 및 사규(취업규칙 등)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,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,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

-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, 사무실 내 유히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
- 책상간 간격, 노동자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되,
-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·컴퓨터·책상·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히공간을 활용
-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(콜센터 등)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

-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, 개인 간 거리 유지,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

- 점심시간은 부서별 시차제(2개조 이상) 적극 운영

- 혼잡한 식당 피하고, 포장·배달 활용하기, 개인 접시 덜어 먹기

- 실내 휴게실, 탈의실, 흡연실,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, 이용 시 마스크 착용

*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을 하고, 휴게실 등에서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와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

- 사무실, 작업장,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1일 1회 소독, 환기는 1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
- 개인용 청소·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,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·비치하거나 구입 지원
- 사무기기, 사무용품 소독·청결을 유지하고, 손씻기·손소독, 기침예절 준수, 개인용 컵·식기·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

마스크

꼭 착용해주세요



〈조치사항〉

-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
-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(구호외치기 등) 자제
- 통근차량은 차량 소독, 운행 후 환기, 탑승 인원 및 방역수칙 준수
- 탑승자 기록,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은 유지

〈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사항 〉

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차량 매일소독, 운행 전·후 환기 · 마스크 착용(탑승·운행자 전원) · 음식물 섭취금지(물, 무알콜 허용) · 탑승자 기록(정원초과 금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추후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시 변경사항 적용 	

7 기숙사 관리 〈공통사항〉

〈조치사항〉

- 방역수칙 게시(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포함) 및 외부인 출입금지, 매일 2회 이상 환기 및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
 - 방문자 출입명부, QR코드 및 안심콜을 이용한 입·퇴사자 관리
- 외부 방문자는 출입 통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입·출입 동선 분리
 - 손씻기·손소독, 공용공간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
-
- 가급적 1인 1실 사용, 식당 외 취사 및 취식 금지, 공용시설(샤워실, 화장실)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
- 신규 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